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4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1.6.23.)에 따른 정보공개 교육의 실시, 사전공개 정보의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교육의 의무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6항).
- 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9호).
- 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7. 22.~8. 11.)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개대상기관의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

제7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이 중 3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제5조(<u>행정정보의 공표</u>)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8. (생략)</p> <p>9. <u>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u></p> <p>10. ~ 16. (생략)</p>	<p>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p> <p>제5조(<u>정보의 사전적 공개</u>) ① ----- ----- ----- ----- ----- ----- -----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공개대상기관의 발주계획, 입찰 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u></p> <p>10. ~ 1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 ③ (생략)</p> <p>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p> <p>① 서울특별시장은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심의회는 <u>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 중 과반수를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u></p> <p>③ ~ ⑧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p> <p>① ----- 법 -----</p> <p>-----</p> <p>-----</p> <p>-----</p> <p>-----</p> <p>-----</p> <p>② ----- <u>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u> -- <u>이 중 3분의 2</u>-----</p> <p>-----</p> <p>-----</p> <p>-----</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개정으로 추가 수반되는 세출예산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비율 조정, 정보공개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혜지(02-2133-5679)